

2019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안내서

2019. 6.



목 차

I. 사업개요	1
1. 추진 배경	1
2. 추진 목적	1
3. 사업 개요	1
II. 사업내용	2
1. 지원대상가구 선정	2
2. 지원대상가구 공단 통보	3
3. 연탄쿠폰 신청자 증빙서류	3
4. 연탄쿠폰 배부 및 반납	3
5. 연탄쿠폰 관리 및 배부결과 제출	3
6. 연탄쿠폰 지원 관련규정	4
7. 작성서식	5
[별첨 1]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	5
[별첨 2] 연탄쿠폰 신청자 개인별 현황표	6
[별첨 3] 연탄쿠폰 신청 총괄표	7
[별첨 4] 지방자치단체별 쿠폰 배부결과 현황	8
[별첨 5] 쿠폰 미배부(반납) 세부 내역서	9
[별첨 6] 연탄쿠폰 관리대장(읍·면·동)	10
[별첨 7] 연탄쿠폰 인수증	11
III. 연탄쿠폰 사업 FAQ	12
1. 신청 및 지원	12
2. 쿠폰사용 관련	14
IV. [※참고사항]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16

I 사업개요

1. 추진 배경

- '08년부터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

2. 추진 목적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연탄가격 인상을 반영한 연탄쿠폰 지원으로 실용적인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3.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9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 사업기간 : `19. 10월 ~ `20. 4. 30일
- 지원방법 : 연탄쿠폰 지원
 - * 가구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약 70,000여 가구
- 주관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 * 「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 *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너지원별 주관기관) 제1항 제5호

구분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조, 제8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2019.6.1. 현재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단, 연탄난로 사용자 제외)

II 사업내용

1. 지원대상가구 선정

- 연탄쿠폰 지원대상자
 - 대상자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로 다음 조건에 해당되어야 함
 - 가.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
 - 나.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다.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9.6.1. 기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수급권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 연탄쿠폰 신청서 접수 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 또는 선정 과정에 있는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 추후 연탄쿠폰 배부 시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확정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쿠폰은 공단으로 반납하여야 하며 상기 내용은 수혜자에게 미리 공지
 -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더라도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부양거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독거노인일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 포함 가능
 - 소외계층 중 독거노인, 장애인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 * 장애인 또는 고령으로 몸이 불편하여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경우 수혜자 명의로 신청(대리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시 부정수급으로 처리)
-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불포함
- 한 세대에 다수의 연탄쿠폰 지원대상이 거주하더라도 지원대상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가능
 - * 예) 아버지가 수급권자이고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한명에게만 지원 가능
- 동일 건물에 서로 다른 세대가 여러이 거주할 경우 각 세대별 지원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탄쿠폰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
- 신청서(별첨 1)는 반드시 본인 서명 또는 날인(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불가)

2. 지원대상가구 공단 통보

- 17개 광역시도는 연탄쿠폰 중복신청자 확인 및 생년월일 오류 여부 확인 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지원대상가구 제출(별첨 2, 별첨3)
- 타 에너지바우처 사업 중복신청에 따른 이중수급 방지를 위해 추후 에너지바우처 사업 전달기관에 신청자 명단 통보 예정
- ※ 타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연탄쿠폰 신청 불가(하절기 에너지바우처만 신청한 경우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미신청 또는 지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연탄쿠폰 지원 가능)

3. 연탄쿠폰 신청자 증빙서류(지자체 보관용)

지원구분	제출서류	
수급권자	생계	생계급여 증명서 등 생계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	의료급여 증명서 등 의료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거	주거급여 증명서 등 주거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	교육급여 증명서 등 교육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외계층	독거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으로 독거노인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으로 동거인이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부양거부 등으로 실질적인 독거노인으로 읍.면.동장의 확인 및 의견 기재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위소득의 52%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연탄쿠폰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소외계층 증빙서류는 해당 읍.면.동에서 보관
- 추후 산업부 등의 현장조사 시 서류 미구비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연탄쿠폰 배부 및 반납

- 공단으로부터 쿠폰 인수 후 인수증(별첨 7)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공단으로부터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배부
- 연탄쿠폰 사용기간 : 수령일부터 `20. 4. 30까지(이후 사용불가)

5. 연탄쿠폰 관리 및 배부결과 제출

- 연탄쿠폰 관리대장 작성.보관(별첨 6)
 -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본인확인, 날인 또는 자필 서명) 및 관리대장 보관
 - * 연탄쿠폰 미수령 민원발생 시 수령여부 확인 근거
 - * 본인 직접수령이 불가능하여 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 징구
 - * 해당 읍면동에서 대상가구별로 연탄쿠폰을 배부하지 않고, 수송업자 및 연탄공장과 직접 거래 후 일괄 쿠폰 전달하는 방법은 부정사용, 쿠폰 미수령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금지

- 쿠폰배부결과 현황표 작성.제출(별첨 4)

- 같은 시.도내에서의 전출은 연탄사용여부 확인 후 배부
- 수혜자 사망 시 연탄을 사용하는 등본상 동거 가족(친.인척 제외)에게는 지원가능하며 공단 요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제출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공단 본사)

- 쿠폰 미배부(반납)세부내역서 작성.제출(별첨 5)

- 반납대상 : 연탄 비사용(타연료 전환 등), 타 시.도 전출(전출 주소지 쿠폰 기입), 비거주, 중복신청, 사망(1인 가구), 난로사용 등
 - * 반납절차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공단 본사)
- 반납쿠폰 타인양도 및 지원대상자 임의변경 절대금지

6. 연탄쿠폰 지원 관련

- 연탄쿠폰 신청기한 이후 대상자 신청불가
- 신청대상자 중 미검증(생년월일 오류, 중복자 등)된 대상자는 대상제외
- 연탄쿠폰은 재발급 불가
- 연탄쿠폰 타인양도, 현금화 등 부정사용 시 지원대상에서 영구제외
- 연탄쿠폰 지원 제한
 - 읍.면.동장 직인누락, 현금교환, 타인양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연탄쿠폰은 대금 지급 제한

7. 작성서식

【별첨 1】 신청인 작성

20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			
인사 적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원대상 분류	전화번호	휴대폰	가족수 (살거주자)
	1. 수급권자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2.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에너지 바우처 관련 사항	3. 소외계층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등본상)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등본상은 아니나 실제 독거노인인 경우) ^{주)}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유무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 신청	
연탄 사용실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또는 사용(예정) 유무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체크시 연탄쿠폰 지원 불가	
	타 난방 연료 전환 계획 (또는 희망) 유무	<input type="checkbox"/> LPG <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 <input type="checkbox"/> 전기 <input type="checkbox"/> 지역난방 <input type="checkbox"/> 등유 <input type="checkbox"/> 기타(연탄외) <input type="checkbox"/> 계획없거나 희망하지 않음	
연간 연탄 사용량	장		
연간 연탄 사용기간	개월		
상기 분인은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연탄쿠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감수하며,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2호에 따라 본인과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이번 연도에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등유 바우처(13조의2 2호 가목), 연탄쿠폰(13조의2 2호 마목) 등을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단, 하절기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은 가능)			
20 신청인 성명 : (인)			
신청 의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독거노인(등본상)은 선정의견 없이 증명서류로 갈음	확인 직급 성명 서명 7급 홍길동 홍길동	
		전화 번호 담당공무원 직통번호 000-000-0000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지자체 보관용). * 지원대상 구분에 따라 증명서류 특별 - 수급권자 증명서류(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류 - 장애인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독거노인용)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주) 지원대상자 전수조사를 위해 신청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기재, 내용오류 등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에 제외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2】 읍.면.동 작성

저소득층 연탄쿠폰 신청명단 개인별 현황표

①순 번	②지원대상 구분	③성 명	④생년월 일	⑤시도	⑥시군	⑦구	⑧읍면동 (행정동)	⑨주소 (도로명 주소)	⑩전화번호 (유선/무선)	⑪에너지바우처 신청 유무 (하절기)	⑫에너지바우처 신청 (예정)유무 (동절기) * 주의사항: ○는 연탄쿠폰 신청안함을 의미	⑬향후 LPG 등 타 난방 연료 전환 계획(또는 희망) 유무	⑭연간 연탄 사용량(장)	⑮연간 연탄 사용 기간(개월)	⑯비 고 (수급권자 및 소외계층 등 세부내역 입력)
1	수급권자	홍길 동	531231	서울		노원 구	중계동	중계로2 길 00	010-000- 0000	0/X	0/X	LPG	500	6	수급권자(생계)
2	차상위계층														
3	소외계층														

- ② 지원대상구분: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의 3가지로만 통일해서 입력한다.
(비고란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을 구분하여 필수 입력)
- ③ 이름 : 띄워쓰지 않고 붙여서 쓴다
- ④ 생년월일: 숫자만 6자리 연속으로 기입한다.(ex : 300101) * 1930.01.01.(X), 19300101(X), 30.01.01(x)
숫자'0'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서식이 텍스트로 되어있어 입력가능(서식변환 금지)
- ⑤-⑦ 시:도의 경우 '서울시를 서울'로 기입하고, 시·군·구는 '동대문구를 동대문구'로 기입한다.
- ⑧ 읍면동 :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으로 기입한다
- ⑩ 에너지바우처 신청 유무(하절기)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시행에 따른 연탄쿠폰 대상 가구의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현황 조사(연탄쿠폰 사업은 동절기 난방 연료 지원 사업으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 가능)
- ⑫ 에너지바우처 신청 또는 사용(예정) 유무(동절기) : 동절기에 연탄쿠폰 또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지 선택 (에너지 바우처 사용을 선택할 경우 타 바우처와 중복 방식을 위해 연탄쿠폰 지원 제외)
- ⑬ LPG, 도시가스 등 타 난방연료 전환 계획(또는 희망) 유무 : 연탄보일러 사용 연탄쿠폰 대상자 중 타 연료 전환 수요 조사(타 연료 전환 등 정부정책, 사업 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
- ⑭ 연간 연탄 사용량(장) : 각 가구별 연간 연탄 사용량 입력
- ⑮ 연간 연탄 사용 기간(개월) : 각 가구별 연간 연탄 사용 기간 입력
- ⑯ 수급권자 및 소외계층 세부내역 :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 소외계층(만65세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세부 내용 입력
- * 같은 광역시·도 내에 중복이 있는지 확인 후 중복자는 삭제한다.

【별첨 3】 지방자치단체 작성

저소득층 연탄쿠폰 신청 총괄표

시·군·구	전년도 연탄 사용가구수 (12월 31일 기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합 계 (D) =A+B+C	연간 연탄사용량 (장)	연간 연탄 사용기간 (개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소계 (A)	소계 (B)	독거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족	소계 (C)			
합 계														
시·군·구명														

【별첨 4】 지방자치단체 작성

지방자치단체별 쿠폰 배부결과 현황

_____ 시·도

제출일 : . .

(단위: 가구)

지방자치 단체명	대 상 가구수	쿠폰 배부 현황																					
		배부 완료								미배부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소계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소계	전출 (미거주)	사망	타연료 사용	기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독거 노인	장애 인	한부 모 가족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독거 노인	장애 인	한부 모 가족					
__ 시·도 (총괄)																							
__ 시군구																							

【별첨 5】 지방자치단체 작성

쿠폰 미배부(반납) 세부 내역서

쿠폰 번호	지원대상구분								성명	시도	시·군	구	읍·면·동	주 소	미배부(반납)사유 1:전출(이거주) 2:사망 3:타연료사용 4:기타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독거 노인	장애 인	한부 모 가족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순으로 정리(위에서 아래로)

【별첨 6】 읍·면·동 작성

연탄쿠폰 관리대장(읍·면·동)

순번	지원대상구분	성명	생년월일	시도	시·군	구	읍·면·동 (행정동)	주 소	전화번호	수량확인		비고
										1차	2차 (추가쿠폰 배부가 있는 경우 적성)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소외계층											

※ 수량확인란은 수령자의 성명을 기입 후 도장날인 또는 자필로 서명한다.
 ※ 비교란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장애인을 구분하여 필수 입력
 ※ 수령 확인에 2차는 연탄가격 고시 개정에 따른 추가 연탄쿠폰이 있는 경우 해당 쿠폰 수령시 작성

연탄쿠폰 인수증

1. 인 계 자 : 한국광해관리공단

2. 인 수 자 : _____ 광역시도 성명 : _____

3. 인계·인수사항

- 연탄쿠폰 수량 : _____ 매(일련번호 : 0-00000 ~ 0-00000)

20 ____년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에 전달할 연탄쿠폰을 상기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____년 ____월 ____일

인 수 자 : _____ 광역시도 _____ 과 성명 _____ [인]

Ⅲ 연탄쿠폰 사업 FAQ

1. 신청 및 지원

- 연탄쿠폰이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탄교환권입니다.
- 연탄쿠폰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수급권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가구이시면 연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읍.면.동이나 공단에 문의해 주세요.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건가요?
 - 신청서는 대리인이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하고, 신청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미기재, 내용 오류 등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재의 정확성과 작성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탄쿠폰은 매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지원기준 및 수급자격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매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우리 집은 기름겸용연탄보일러인데 연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 기름겸용연탄보일러 사용가구도 연탄쿠폰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탄사용가구로 엄마는 수급권자이고, 저는 장애인인데 같이 살고 있습니다. 쿠폰은 몇 가구로 받을 수 있나요?
 - 연탄쿠폰은 가구 당 중복 수량이 불가하므로 수급권자나 장애인가구 중 1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후 지원 가능합니다.
- 잠시 집을 비운사이 연탄쿠폰 신청기한이 지났다고 합니다.
 - 연탄쿠폰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연탄쿠폰 외 에너지바우처(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 수급권자인데 집에서 연탄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난로는 보조난방기구로 쿠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집은 기름(가스, 전기 등)보일러인데 가게에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연탄쿠폰은 가정난방용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가정용을 제외한 영업·상업용(식당, 화훼, 축산, 종교단체, 여관, 미용실 등)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쿠폰 수급자명단에는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읍·면·동에서 작성·제출한 신청자 명단에 없다면 당해 연도에는 쿠폰을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쿠폰을 신청했는데 수혜자가 사망했습니다. 쿠폰을 반납해야 하나요?
 - 당해 연도에 발행한 쿠폰은 사망자와 함께 살던 가족(친·인척 제외)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사망 시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 '18년 선정기준 : <2018.7.1. 기준>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로 제한
- 쿠폰신청 후에 장기간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없나요?
 - 연탄쿠폰은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동절기에 연탄쿠폰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는 입원확인서 등을 증빙하여 동거 가족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탄쿠폰 신청 후에 수급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쿠폰을 반납해야 하나요?
 - 대상자 선정기준일('19년 선정기준 : 2019.6.1.) 이후 수급자격을 상실했다라도 연탄보일러를 사용중이라면, 당해 연도에 발행한 쿠폰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 가스, 등유를 사용하는 저소득층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 연탄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연탄쿠폰을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 연탄 이외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사용자께서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 사용자께서는 에너지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쿠폰사용 관련

- 연탄쿠폰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 연탄쿠폰은 연탄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평소 거래하던 동네 연탄가게, 인근의 수송업자, 거주지 내 연탄공장으로 연탄을 주문하시고 쿠폰으로 연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합니다.
- 연탄쿠폰 사용할 때와 현금으로 연탄을 구매 시 연탄수량이 다른 것 같습니다.
 - 배달환경이 열악(고지대, 원거리)하고 쿠폰수량(소량)만 주문할 경우 배달료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탄쿠폰을 분실했습니다.
 - 타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공단으로 분실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와 관련해서는 해당 읍·면·동에서 공단으로 공문발송 필요)
- 분실 쿠폰을 찾았습니다.
 - 공단에 분실 등록 해제를 요청하시면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해제 관련해서는 해당 읍·면·동에서 공단으로 공문발송 필요)
- 연탄쿠폰으로 연탄을 몇 장 정도 구매할 수 있나요?
 - 연탄 소비자가격은 정부에서 고시한 공장도가격+판매수수료+운반비에 배달료(자율화)로 배달료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가까운 연탄공장으로 문의해주세요
- 연탄 재고가 있습니다. 연탄쿠폰은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 쿠폰을 받으신 날부터 `20. 4. 30.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 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아무리 저소득층이라 해도 쿠폰 2장으로 겨울을 날 수는 없습니다.
 - 연탄쿠폰은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동절기 연탄사용량의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겨울철에 쓸 연탄 전량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탄판매점과 연탄배달업자가 연탄쿠폰을 거부합니다.
 - 성함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공단에서 조치하겠습니다.
- 강원도에서 연탄쿠폰을 받고 경상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연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 이사한 집에서 연탄을 사용하신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강원도에서 연탄쿠폰을 신청하고 경상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쿠폰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 연탄쿠폰 수혜대상자가 전출 시에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전출된 읍·면·동으로 연탄사용 유무를 확인한 후 연탄쿠폰을 전달해야 합니다. 전출전 읍·면·동 사무소에 전달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쿠폰 전액을 쓰지 않는다면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연탄쿠폰은 연탄교환권으로 연탄구입만 할 수 있습니다.
 - 현금이나 물품으로 바꾸시면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향후 연탄쿠폰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쿠폰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나 양도할 수 있나요?
 - 판매나 양도시 연탄쿠폰 지원대상에서 영구제외되며, 해당 쿠폰은 대금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에 반납해주세요.
- 반납할 쿠폰을 누락된 다른 가구에게 배부하려고 합니다.
 - 쿠폰은 발행 시 기명한 당사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양도에 해당되어 환수 조치합니다.
- 연탄쿠폰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꼭 제공해야 하나요?
 - 연탄쿠폰지원의 적정성을 실증하기 위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수집하며, 수집시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을 거절할 경우 연탄쿠폰 지원대상자임을 파악할 수가 없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연탄쿠폰으로 연탄 이외 전기, 가스, 등유 등 다른 에너지원 구매가 가능한가요?
 - 현재 연탄쿠폰으로 타에너지원 구매는 불가능 합니다. 추후 연탄 이외 에너지원도 구매가 가능토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 기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공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 : 033-902-6733~5
 - 강원지사 : 033-550-9111~7
 - 영남지사 : 053-740-5710~5712, 5714~15
 - 충청지사 : 042-334-0121, 0124~0125, 0127
 - 경인지사 : 02-3702-6606
 - 호남지사 : 062-975-0613

IV ※참고사항]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관련 안내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단열, 창호, 바닥공사 등)를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및 서민복지 향상 기반 구현
 - * 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및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2018-73호)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업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재단**이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홍보지원
- 사업명 : 2019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사업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재단**(전화번호 : 1670-7653,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 단,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제외
 -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사업내용
 -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 연탄보일러 교체 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 가구 : 가구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2. 대상가구 추천 요령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중 아래 내용에 1가지 이상 해당 가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대상가구 추천 기준

- 에너지이용 기반 시설이 없는 가구
- 단열,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대상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기타 동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신규 지원가구 및 에너지바우처 • 연탄보일러 교체 등 타 복지사업 연계 우선지원

○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 * 단, 지자체 집수리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지원 가능
 - ex. (집수리) 화장실, 싱크대 보수 + (효율개선)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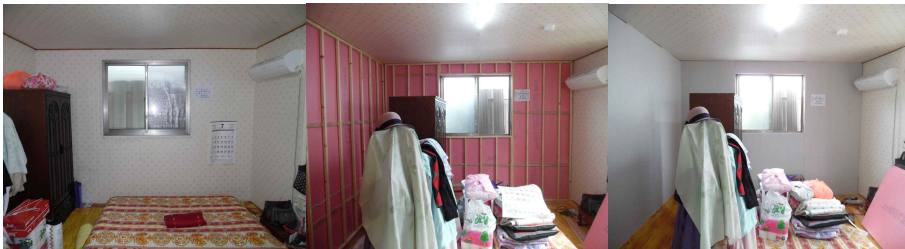
※ 동 사업은 추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3. 지원 내용

○ (효율개선 시공 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① 단열공사 : 외기의 벽면에 단열재를 붙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7cm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



<벽면 단열재 부착 → 구조틀 시공 → 석고보드 → 도배 마무리>

② 창호공사 :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창을 교체



<창짝해체 → 신규틀시공 → 단열폼사춤 → 노출부마감>

③ 바닥공사 : 난방배관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바닥에 공사

※ 보일러 배관(가스, 수도), 전기, 분배기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하며, 바닥설치 후 보일러와 연결하여 반드시 시운전



<장판제거 → 바닥판넬 설치 → 보일러 연결 → 장판마무리>

④ 보일러 교체 지원 : 연탄보일러 및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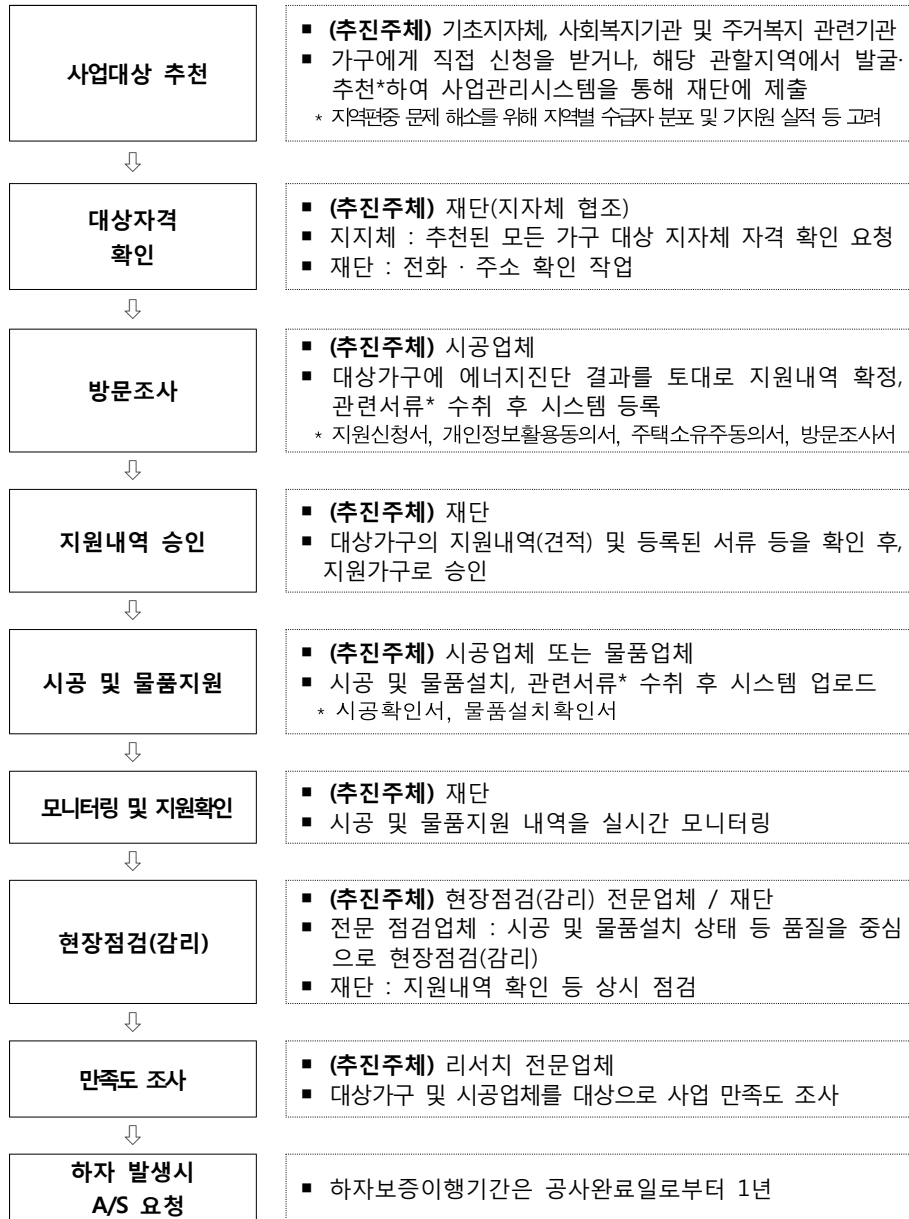
※ 단, 설치조건(보온, 응축수 배수 등) 가능 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 배관(가스, 수도, 난방, 전기, 분배기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기존 보일러 확인 → 보일러 철거 → 보일러 교체 설치>
(왼쪽부터 가스보일러 시공 전/후, 기름보일러 시공 전/후)

4. 지원 절차



[별첨1]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기본현황	시 · 도		시·군·구		신청인
	생년월일 (8자리)			보호구분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자가(「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인 경우는 신청 불가
	세대유형			세대원수	명
	주소	우)		연락처	
	주거실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보증부월세 <input type="checkbox"/> 전세무료임차 <input type="checkbox"/> 부분무료임차 <input type="checkbox"/> 기타			
	난방종류	<input type="checkbox"/> 기름 <input type="checkbox"/> 심야전기 <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 <input type="checkbox"/> LPG <input type="checkbox"/> 연탄 <input type="checkbox"/> 기타()			
신청기관명			신청기관 담당자	(인)	
붙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대상가구 증명서류(3개월 이내), 대상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각 1부					
[필수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세대원수, 연락처, 주거실태, 난방종류 · 수집·이용 목적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확정 후 5년간 보유하며 만료 후 파기 · 수집 동의 거부권리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해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지원가구 선정이 불가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필수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시공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세대원수, 연락처, 주거실태, 난방종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연도 후 5년 간 보유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지원가구 선정이 불가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